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(을)] (뒤 쪽) 작성방법 ※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[별지 제8호서식(갑) 제1쪽 ㉗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“1. 매출거래”란에, ㉙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“2. 매입거래” 란에 각각 적습니다] 거주자가 작성합니다. ※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(www.smbs.biz)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(예시：미국 USD)로 작성합니다. 1. ①란에는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. 2. ②･③란에는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. 3. ④란에는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. 4. ⑤란에는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. 5. ⑥란에는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계산 방식에 의하여 연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. (예시) 차입금액이 USD 100(60일), USD 200(180일)인 경우 {(100×60)＋(200×180)}/365=115 6. ⑧란에는 ⑤란의 금액을, ⑨란에는 ⑥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(최초 고시)을 적용하며, “평균환율”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(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(www.smbs.biz)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). 7. ⑩란에는 차입일을, ⑪란에는 만기일을 적습니다. 다만,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대신 상환일을 적습니다. 8. ⑫란에는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.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. 9. ⑬란에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 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.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6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6항제2호 4 기타 합리적인 방법 5 10. ⑭란에는 ⑮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,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. (예시)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,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%인 경우 1%×12월/3월=4% 11. ⑮란의 단위는 “원”이며,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(소득세)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.[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⑮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8호서식(갑) 제1쪽 ㉗와 ㉙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] 보증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(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)과 ⑭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, 만기(상환)일은 제외합니다. 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